

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·통일교육 활성화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형 재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김 형 재 의원입니다.

이승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10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·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,

서울시 초·중·고등학생 대상 ‘자유평화통일과 국가안보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.

주요내용은 실효성 있는 평화·통일교육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·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관해 정비하고, 「통일교육 지원법」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에 평화·통일 교육 관련 토론회 및 강연회, 체육·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